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60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로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 우리도의 「참여복지」 수준을 Up-Grade하기 위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고
- 벤처기업 창업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한 오창벤처프라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벤처기업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며
- 2003. 8. 30 신설된 중평군의 지방재정 여건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1. 1. 16 중평출장소 개청이후 부터 중평군 설치 이전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도유재산을 중평군으로 무상양여하고
- 음성군이 금왕 다목적운동장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공설운동장을 매각함에 있어 운동장 부지중 도유지의 매각이 불가피함에 따라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262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연 5,455㎡(1,650평, 지하 1층, 지상 5층)
 - 지하·옥탑 :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
 - 1~3층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기기 전시관, 물류창고 등
 - 4 층 : 사회복지단체 사무실(17개)
 - 5 층 : 대강당, 프로그램실, 점자도서관
- 사업기간 : 2003~2005
- 사 업 비 : 5,500백만원(국비 500, 특별교부세 2,000 도 비 3,000)

□ 재산의 처분

< 오창벤처프리자 건물매각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1(오창벤처임대공단내)
- 재산규모 : 연 7,124㎡(2,155평, 지하 1층, 지상 6층)
- 매각시기 : 2003. 12
- 재산가액 : 6,700백만원

< 증평출장소 개청이후 취득 증평군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 >

-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의 일원
- 재산규모
 - 토 지 : 380필지 185,075.2㎡(55,985평)
 - 건 물 : 21동 12,478.8㎡(3,774평)
- 양여시기 : 2003. 12
- 재산가액 : 5,596백만원(토지 3,568 건물 2,028)
- ※ 양여조건 : 양여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반환하여야 함

< 금왕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 >

- 위 치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45외 2필지
- 재산규모 : 3,031㎡(917평)
- 매각시기 : 2003 ~ 2004
- 재산가액 : 594백만원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양수취득	양여처분	비 고
계	5,500,000 (도비 3,000,000)	7,294,076		5,596,865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 립	5,500,000 (도비 3,000,000)				
오창벤처프리지 건물 매각		6,700,000			
증평출장소 개칭이후 취득 증평군 관내 도유재산 무상양여				5,596,865	
금왕공실운동장 부지 매각		594,076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천원)

말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자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건물	1 건	5,455㎡ (1,660평)	5,500,000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외 2필지	5,455㎡ (1,660평)	5,500,000	2003 ~ 2006	충청북도종합 사회복지센터	신 축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200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

(단위 : 천원)

말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 각 사 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1 건	3,031㎡ (917평)	3,031㎡ (917평)	594,076			
	건물	1 건	7,124㎡ (2,155평)	7,124㎡ (2,155평)	6,700,000			
	기타							
1	토지	음성군 음성읍 금석리 431-45외 2필지	3,031㎡ (917평)	3,031㎡ (917평)	594,076	금원공실운동장 이전	공개경쟁 추후의정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청원군 오성면 각리 641-1	7,124㎡ (2,156평)	7,124㎡ (2,156평)	6,700,000	벤처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	충청북도지역 신업진흥원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배임,기부채납,무상양수,한지,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중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